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7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1.

발 의 자:전진숙・김선민・이기헌

김 윤・김원이・김남희

김정호 • 권칠승 • 윤후덕

이용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데에 이어,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높아 지고 있음. 특히,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 용률은 2018년 2.7%에서 2023년 3.1%로 증가하고 있어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큰 실정임.

그런데 이러한 신종 담배는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흡연전용기구를 사용하는데, 현행법령상 담배갑 포장지에 대하여만 경고문구 및 경고 그림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,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 에도 흡연전용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함.

또한, 담배 광고를 할 때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, 최근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동물 캐릭터 등을 활용한 광고

가 행해져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흡연전용기구, 담배광고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의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전 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흡연전용기구에 부착해야 할 경 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(안 제 9조의2제4항).
- 나. 흡연전용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,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,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9조의4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"담배"란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.

제9조의2의 제목 중 "담배"를 "담배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담배에"를 "담배 및 흡연전용기구(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고형물을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하는 데에 이용되는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"로 한다.

제9조의4의 제목 중 "담배"를 "담배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담배"를 "담배 및 흡연전용기구(이하 이 조에서 "담배등"이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담배"를 "담배등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중 "담배"를 "담배등"으로 한다.

2의2. 동물이나 동물 캐릭터, 만화나 영화 등의 등장인물을 광고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

제31조의2제4호 중 "담배"를 "담배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"담배"란 「담배사업법」 제
	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말한
	<u>다.</u>
제9조의2(<u>담배</u> 에 관한 경고문구	제9조의2(<u>담배등</u> 에 관한 경고문
등 표시) ① ~ ③ (생 략)	구 등 표시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4
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담배에</u>	<u>담배 및</u>
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	흡연전용기구(니코틴이 포함된
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	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호흡
과 그 표기 방법·형태 등은	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하는
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.	데에 이용되는 전자담배의 전자
	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
	는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기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
	<u></u>

제9조	<u> </u> 의4(<u>담배</u> 에	관	한 광	고의	급
지	또는	제한)	1	<u>담배</u>	에 관	·한
광	고는	다음	각	호의	방밭	텔에
한 ⁻	하여	할 수	있다	} .		

- 1. ~ 4. (생 략)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 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흡연자에게 <u>담배</u>의 품명·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넘지 아니할 것
- 2. (생략)

<신 설>

- 3. 4. (생략)
- ④ 제조자등은 <u>담배</u>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.
- ⑤ (생략)

제31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

급지 또는 제한) ① <u>담배 및</u> 흡연전용기구(이하 이 조에서 "담배등"이라 한다)							
"담배등"이라 한다)							
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							
② (현행과 같음) ③							
③							
1담배등							
1담배등							
2. (현행과 같음) 2의2. 동물이나 동물 캐릭터, 만화나 영화 등의 등장인물을 광고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④							
2. (현행과 같음) 2의2. 동물이나 동물 캐릭터, 만화나 영화 등의 등장인물을 광고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④							
2. (현행과 같음) 2의2. 동물이나 동물 캐릭터, 만화나 영화 등의 등장인물을 광고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④							
2의2. 동물이나 동물 캐릭터, 만화나 영화 등의 등장인물을 광고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④							
만화나 영화 등의 등장인물을광고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3. · 4. (현행과 같음)④							
<u>광고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</u> 3.・4. (현행과 같음) ④ <u>담배등</u>							
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④ <u>담배등</u>							
④ <u>담배등</u>							
,							
⑤ (현행과 같음)							
제31조의2(벌칙)							

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3. (생 략)
- 4. 제9조의4를 위반하여 <u>담배</u>에관한 광고를 한 자
- 5. 6. (생략)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																	•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<u>담배등</u>
- 5. 6. (현행과 같음)